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3
----------	------

제출일자 : 2020. 4. 9.

제 출 자 : 달성군수

2020. 4. 9.

1. 제안이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해촉,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과 협약의 해지, 보조금 등의 반환 사유를 상위법령과 동일규정으로 개정하여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1)
- 나. 보육정책위원회 해촉(안 제6조)
- 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안 제16조)
- 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협약의 해지(안 제19조 제1항)
- 마. 보조금 등의 반환(안 제3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의3
-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 별표8의 2
- (3)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2. 11. ~ 3. 2.
 - (나) 예고결과 :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0이하”를
“100분의 45이상”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중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제3항 중 “제4호까지에 따라서” 를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1. ----- 45이상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해촉) (생략)	제6조(해촉) (현행과 같음)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삭제)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삭제)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삭제)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18조에 따른 지휘·감동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삭 제)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삭 제)

6 ~ 10 <신 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5년으로 하고,-----

제19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u>제35조 (보조금 등의 반환)</u>	<u>제35조 (보조금 등의 반환)</u>
(생 략)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삭 제)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과 내용)
 법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